

# “전기용품관련 분쟁해결, 중재 활용화”

## - 분쟁예방과 해결보장 -



글 · 박원 수석위원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 분쟁의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1966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국제적 분쟁해결기관이다. 아직도 국내외 상거래중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법원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소송절차는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 당사자가 이용을 기피하거나 아예 권리를 포기하기도 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따라 저렴한 비용과 신속, 공정한 판정으로 어떠한 거래상의 분쟁도 확실하게 해결하고 있다.

### 주요 업무는 중재, 알선, 상담

중재란, 계약(또는 거래) 당사자들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을 선정해 그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고 그 판정에 승복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따라서 중재는 당사자들이 서로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자율적이고 우호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이다.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어떤 형태의 것이든 모두 해결한다. 단 형사사건, 행정사건, 가사심판사건 등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사건은 제외된다.

그리고 클레임에 관한 일반적 문의사항, 해결책은 상담을 통하여 이보다 발전한 알선은 모두 국내외 분쟁해결을 중재원이 개입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도 하고 합의 내지 권유로 해결한다. 그러나 이 두가

지 방법은 구속력이 없다.

### 중재의 이점

#### 1. 중재판정은 법원보다 훨씬 신속하다.

- 한 번으로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된다.
- 신속절차의 경우 1회 심리로 1개월 이내 해결이 가능하다.

#### 2. 중재판정은 법원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단심제이고 변호사 선임도 자유이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며 특히 청구금액이 클수록 비용이 적어진다.

#### 3. 중재판정은 법원의 판결처럼 법적 구속력이 있다.

대법원의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절대 보장된다.

#### 4. 중재절차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된다.

상거래상의 영업비밀 또는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재절차를 공개하지 않는다.

#### 5. 중재판정은 해당부분의 최고의 전문가가 내린다.

각 분쟁사안에 정통한 국내외 저명한 법조계, 학계, 실업계 및 공공단체의 전문가 1,040여명으로 구성된 중재인단 중에서 직접 당사자가 선임하거나 선임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6. 중재판정은 국제적으로도 효력이 인정된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일명 New York 협약)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외국에서도 승인과 강제집행이 보장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123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 중재는 계약서에 중재조항만 삽입해 두면 언제든 신청가능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를 이용하려면 중재합의(중재계약)가 필요하다. 계약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는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거나 서면(약정서, 각서, 합의서, 오고간 서신 등)으로 남겨두면 되는데 일단 이 조항이 계약서에 삽입되면 법원에 소제기가 금지된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계약)가 없었다 해도 중재를 이용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들이 중재로 해결할 것을 합의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중재합의(중재계약)을 해두면 유리하다.

### 국내 중재조항 삽입 예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 최종 해결한다”를 계약서의 한 조항에 넣어야 한다.

### 국제 중재조항 삽입 예

#### \* 표준중재조항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에 의하여 내려지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 \* Standard Arbitration Clause :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그러나 위 국제표준중재조항에 일방당사자가 반대하면 신청인주의, 신청하는 당사자의 나라에서 중재하는 피신청인주의 중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다.

### 중재절차는 쉽고 편리

#### 중재신청 및 비용예납

중재합의서, 중재신청서, 청구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서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시)과 중재비용을 예납하면 된다. 단 중재비용은 일단 신청인이 예납하면 분쟁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추후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접수 및 통지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확인이 끝나면 양 당사자에게 중재신청이 접수되었음을 통지함과 동시에 중재인 선정을 의뢰한다.

#### 피신청인의 대응

신청인은 중재신청 접수통지의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국제중재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 중재판정부 구성

중재사건을 판정할 중재인은 분쟁당사자가 직접

선정하거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추천한 중재인 후보 중에서 선임하실 수 있다. 중재인의 자격은 법조계, 학계, 업계 등 해당분야에서 최소한 20년 이상의 경험 있는 전문가임은 물론 신뢰성, 성실성, 신망, 판단력 등을 갖춘 인사이다.

### 중재심리

중재판정부는 심리일시, 장소, 방식을 결정해 심리 개시 10일전(국제중재는 20일 전)까지 분쟁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주장, 증거방법,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판정부는 양 당사자가 주장 및 입증을 다하였다 고 인정될 때 심리의 종결을 선언한다.

### 중재판정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중재가 개시된 날로부터 가장 신속히 판정이 내려진다. 중재판정은 중재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종판정을 내린다. 신청 금액이 6천만원 이하는 1인 중재인이, 6천만원 초과 시에는 3인의 중재인이 심리하고 판정한다.

### 최근의 상사분쟁 동향

#### 건설분쟁 증가 추세

금년 3/4분기까지 접수한 무역 및 국내외 상거래 분쟁 사건이 총 434건, 분쟁금액은 2,297억원(US \$ 199,766,260)으로 99년도 동기(392건, 2,853억원)에 비해 중재, 알선사건은 10% 증가한 반면, 소액사건 증가와 대형분쟁사건의 감소로 분쟁발생 금액은 19%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액사건증가

US \$ 10,000 이상 US \$ 50,000 이하의 사건은 127건으로 전년동기와 동일하나, 청구금액이 없는 사건이 20건에서 50건으로 150% 증가되고 또한 US

\$ 5,000 미만의 소액사건이 58건에서 78건으로 34% 증가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중소기업체와 연관된 소액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US \$ 5,000,000 이상 US \$ 10,000,000 이하의 대형사건이 전년동기에는 15건(분쟁금액 미화 188,078,822달러)이었으나 금년도에는 7건(미화 129,499,218달러)으로 줄어들어 올해 3/4분기까지 전반적인 분쟁금액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계약 및 품질 관련이 주원인

3/4분기까지 접수된 총사건 가운데 대금결제사건이 139건, 품질불량사건이 94건, 계약내용변경 및 파기사건이 90건, 선적 및 납기지연사건이 49건이었다. 전년기에 비해, 계약내용 변경 및 파기사건은 건수와 분쟁금액 공히 60%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품질불량사건도 34%, 수수료미지급사건도 41% 증가 했다.

따라서 국내무역업자는 이미 체결한 계약을 성실히 수행,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나아가 품질관리와 수수료분쟁과 직결된 해외대리점 및 판매업자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전기 · 전자제품 클레임 37건

분쟁과 관련된 품목을 살펴보면,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가 77건, 잡제품 65건, 섬유류 63건, 1차산품 61건, 전자전기제품 37건이었다. 특이한 사항은 잡제품이 전동기 12건에서 65건으로 441%나 증가했고(금액은 413% 증가) 1차산품도 건수면에서 56%, 금액면에서 30% 증가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주로 중소기업이 교역대상으로 삼고 있는 잡화와 1차산품에 관한 클레임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 클레임 발생 - 미국, 중국, 일본 순

국내 당사자들간의 분쟁사건인 국내중재, 알선사건 205건을 제외한 국제사건 229건을 분석한 결과 미국

22건(건수 8% 감소, 금액 872% 증가), 중국 21건(건수 31% 증가, 금액 240% 증가), 일본 13건(건수 85% 증가, 금액 58% 감소)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무역량이 많은 미국, 중국, 일본과의 클레임 발생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에 대만, 영국, 이탈리아가 각 8건, 홍콩, 브라질, 호주 각 7건, 사우디아라비아 6건이었다.

### 국내 중재사례

#### 공사대금청구 중재건

- \* 사건번호 : 내35호
- \* 품 목 : 공원묘역 시설공사
- \* 청구금액 : 3,447,517,000원
- \* 판정일자 : 1999.
- \* 판정주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447,517,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3. 5.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한다.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 판정이유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공원묘역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함에 있어 당초 계약분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합하여 총공사대금 5,347,517,000원의 공원묘역 시설공사를 하기로 하고 준공검사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공사대금중 금 1,95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설계 용역비 포함) 금 3,447,517,000원을 지급치 아니하고 있어 이를 신청인이 청구함에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반대증거나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인정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다.

#### [ 중재신청서 작성사례 ]

## 중 재 신 청 서

### 1. 신 청 인

회사명 : (주)한국제약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대표자 : 대표이사 이도령 (인장날인)

대리인 : 이방자 (인장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00

### 2. 피신청인

회사명 : SANTIAGO LTD.

주소명 : FERNANDEZ 1000, SANTIAGO, CHILE

대표자 : DOMINGO

### 3.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71,07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0년 2월 11일부터 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 4. 신청이유

- (1) 신청인은 한국의 계약회사인 (주)한국제약으로서 산디아고에 소재한 피신청인에게 의약품을 수출하였다.
- (2)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1988년부터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초기 결제조건은 신용장 방식이었다.
- (3) 2000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용장방식 대신 D/A 120days로 결제조건의 변경을 제의하여 신청인은 거래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조건을 수용하였다.
- (4) D/A 조건으로 거래를 한 후 피신청인은 결제 만기일을 넘겨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1999년 10월 기준으로 미화 12,690달러가 미지급상태에 있었다.
- (5) 신청인은 본건 해결을 위하여 1999년 10월 대리인을 현지에 파견하여 미화 19,260달러를 회수하였으며 동시에 잔액 미화 105,430달러에 대하여는 2000년 2월 10일까지 분할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또한 본 각서에는 분쟁 발생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두었다.
- (6) 그러나 그 이후 신청인은 미화 34,360달러만 피신청인으로부터 회수하였고 현재 미결제 잔액 미화 71,070달러가 남겨져 있고 그동안 피신청인의 지불지연으로 신청인은 이자부담을 안게 되었다.
- (7) 그러므로 신청인은 미결제잔액 미화 71,070달러와 은행연체이자율에 근거하여 지연이자를 피신청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하기 위하여 귀원에 중재를 신청함.

### 5. 입증방법

갑제1호증의 1	합의서
갑제1호증의 2	각 서
갑제2호증의 1 내지 3	각송장
갑제3호증	서 신
갑제1호증	서 신

신청인 (주)한국제약

대표이사 이 도령 (인)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귀중